

## 건강보험 (암)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

※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해당란에 표기 (앞 면)

산정특례번호	*공단기재사항	접수일자	*공단기재사항
수진자	① 건강보험증번호	② 가입자(세대주)	
	③ 성명	④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	
	⑤ 휴대전화번호	⑥ 자택전화번호	
	⑦ 이메일주소	⑧ 등록결과 통보방법 <input type="checkbox"/> 알림톡 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	
	⑨ 주소		

### 【요양기관 확인란】

① 신청구분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암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등록암 <input type="checkbox"/> 중복암		
② 진료과목	③ 진료구분 <input type="checkbox"/> 입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외래	④ 진단확진일
⑤ 상병명 ( <input type="checkbox"/> 원발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이)	⑥ 상병코드	⑦ 특정기호 V193
⑧ 최종확진방법 ※중복체크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1. 조직학적 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세포학적 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3. 영상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MRI <input type="checkbox"/> CT (소견 : ) <input type="checkbox"/> Sono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) <input type="checkbox"/> 4.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 생화학적 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역학적 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혈액학적 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5.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<input type="checkbox"/> 6. 기타( )		
⑨ 조직학적·세포학적 검사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·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등록기준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* * 상병별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신청서를 발행하여야 함		
⑨-1 조직학적·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※중복체크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1. 전신상태가 ECOG performance status 3 이상인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2. 출혈 위험성이 큰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3. 검사를 위한 전신마취 및 수술을 견딜 수 없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4.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5. 기타* ( <input type="checkbox"/> 1.잔존암이 있으면서 제거·소멸을 목적으로 치료중인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2. 그 외 사유 ) * 조직학적·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가 5. 기타 사유 단독인 경우, 검사결과지 첨부		
⑨-2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(확진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)		

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요양기관명 (기호) : ( ) (직 인)

담당의사 (면허번호/전문의 자격번호) : ( / ) (서명 또는 인)

담당의사 전문과목 :

요양기관 전화번호 :

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일 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수진자와의 관계 ( 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안내사항

- 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
- 2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(비용의 본인부담), 제8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- 3. 「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)
  -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강보험증번호, 세대주 성명, 수진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, 주소, 신청인 성명, 수진자와의 관계, [요양기관 확인란]에 기록된 신청구분, 진료과목, 진료구분, 진단확진일, 상병명, 상병코드, 특정기호, 최종확진방법, 조직학적·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,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등을 수집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- 공단이 수집·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.

유의사항

- 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7조(부당이득의 징수)
  -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[요양기관 확인란]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위 법령 및 의료관계법령(의료법 제66조 등)에 의거,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해당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한 것으로 확인·결정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
- 2.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)
  - 고시 제7조(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)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자 및 요양기관에 검사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3.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4. 요양기관 확인란은 반드시 해당 상병으로 확진한 요양기관 및 담당의사가 작성 후 자필서명·확인하여야 합니다.
- 5.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, 30일 경과 후 신청 시 신청일부부터 적용됩니다.
- 6.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, 산정특례 등록내역이 원천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7.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 시 [산정특례 대상자 조회]와 연관되므로 본인서명이 필수로 요구됩니다.
  - ※ 단, 수진자가 미성년인 경우 또는 중증치매·정신질환·의식불명 등으로 수진자 본인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거나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(징구) 후 등록함
    - 미성년자 : 법정대리인(부모 등) - 인지능력과 의사판단이 어려워 위임이 불가한 경우 : 성년인 민법 상 가족 등
- 8. 산정특례 등록 이후 모든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수진자의 산정특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[수진자]

- ①, ② : 산정특례 등록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와 건강보험증 가입자(세대주)명을 각각 기재합니다.
- ③, ④ : 산정특례 신청인의 성명을 한글로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.
- ⑤ :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⑥ :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(부재시 생략 가능)
- ⑦ : 등록결과 통보 등을 위해 수진자 또는 수진자 대리인의 연락 가능한 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.
- ⑧ :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방법(알림톡 또는 이메일)을 선택하여 필수적으로 "✓" 표시합니다.
- ⑨ : 신청 시점에서의 수진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.

[요양기관 확인란]

- ① : 신규암, 재등록암, 중복암 신청 여부를 해당란에 "✓" 표시합니다.
- ② : 질환의 확진을 실시한 진료과목을 기재합니다.
- ③ : 입원 또는 외래 여부를 해당란에 "✓" 표시합니다.
- ④ : 최종확진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해당질환으로 판정한 날을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.
- ⑤, ⑥, ⑦ : 확진한 질환의 상병명, 상병코드,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.
- ⑧ : 최종확진방법 작성 시,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.
  - (검사항목) 1~6에 해당하는 내역을 "✓"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.
- ⑨ : 해당 상병의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조직학적·세포학적 검사가 필수인 상병에서 조직학적·세포학적 검사 불가하여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 이 경우에는 전문의가 건강보험(암)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및 발행해야 합니다.
  - ⑨-1 : 조직학적·세포학적 검사가 불가한 사유를 한 가지 이상 "✓" 표시 또는 텍스트 형태로 기재합니다.
  - ⑨-2 : 확진 의견을 포함하여 진료내역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
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제도 안내

- 1. 제도 목적 : 암치료를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 완화
- 2. 암 산정특례 등록대상
  -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의 해당상병 중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진된 암 환자
- 3. 산정특례 등록 후 해당 질환 및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으로 진료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: 5%
  - ※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 등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 및 비급여는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
- 4. 적용기간 : 5년(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까지)
  - 다만, 암환자로 등록된 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다른 암종(전이암 제외)에 대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한 암의 진단확진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전날까지만 적용함